보험업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6호, 2024. 9. 20., 타법개정]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65, 2968

제1장 총칙 <개정 2010. 7. 23.>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31,, 2021. 4. 20,, 2022. 12. 31.>

- 1.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생명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 나. 손해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다목에 따른 질병·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 다. 제3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 2.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 3. "생명보험업"이란 생명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4. "손해보험업"이란 손해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5. "제3보험업"이란 제3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6. "보험회사"란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7. "상호회사"란 보험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보험계약자를 사원(社員)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 8. "외국보험회사"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9. "보험설계사"란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사단(社團)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 10.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 서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 11. "보험중개사"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 12.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 13. "신용공여"란 대출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자금 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보험회사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거래를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말한다.

- 14. "총자산"이란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에서 영업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15. "자기자본"이란 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자본조정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합계액에서 영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합계액을 빼 것을 말한다.
- 16. "동일차주"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및 이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17. "대주주"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 18. "자회사"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조합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의 그 다른 회사를 말한다.
- 19. "전문보험계약자"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자는 일반보험계약자로 본다.
 - 가. 국가
 - 나. 한국은행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 라. 주권상장법인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20. "일반보험계약자"란 전문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3조(보험계약의 체결)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 <개정 2010. 7. 23.>

- **제4조(보험업의 허가)** ①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 가. 생명보험
 - 나. 연금보험(퇴직보험을 포함한다)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 2.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 가. 화재보험
 - 나. 해상보험(항공 운송보험을 포함한다)
 - 다. 자동차보험
 - 라. 보증보험
 - 마. 재보험(再保險)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 3.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
 - 가. 상해보험
 - 나. 질병보험

- 다. 간병보험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보험종목의 재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9조제2항제 2호의 보험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12. 8.>
- ③ 생명보험업이나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전부(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재보험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제3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④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전부(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재보험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경제질서의 건전성을 해친 사실이 없으면 해당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의 종목으로 신설되는 보험종목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⑤ 제3보험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제10조제3호에 따른 보험종목을 취급할 수 있다.
- ⑥ 보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및 외국보험회사로 제한하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하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본다.
- ⑦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⑧ 제7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보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신설 2020. 12. 8.>

- 제5조(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1.>
 - 1. 정관
 - 2. 업무 시작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3. 경영하려는 보험업의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의 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0. 7. 23.]

- 제6조(허가의 요건 등) ①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외국보험회사 및 제3항에 따라 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보험회사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 7. 31.>
 -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금을 보유할 것
 -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고 그 경영하려는 보험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物的)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한 업무와 관련된 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 4.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으며,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 ②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제9조제3항에 따른 영업기금을 보유할 것
 - 2. 국내에서 경영하려는 보험업과 같은 보험업을 외국 법령에 따라 경영하고 있을 것
 - 3. 자산상황・재무건전성 및 영업건전성이 국내에서 보험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을 것
 - 4.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출 것

- ③ 보험종목을 추가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0. 12. 8.>
- 1.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할 것(다만, 제1항제4호의 허가 요건은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④ 보험회사는 제1항제2호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고 보험가입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삭제 < 2015. 7. 31.>
- ⑥ 삭제 < 2015. 7. 31.>
- ⑦ 삭제 < 2015. 7. 31.>
-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승인의 세부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7. 31.>

- **제7조(예비허가)** ① 제4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예비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예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예비허가의 조건을 이행한 후 본허가를 신청하면 허가하여야 한다.
 - ⑤ 예비허가의 기준과 그 밖에 예비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 제8조(상호 또는 명칭) ① 보험회사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주로 경영하는 보험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② 보험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글자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7. 23.]

- 제9조(자본금 또는 기금) ① 보험회사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함으로써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자본금 또는 기금의 액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집수단 또는 모집상품의 종류·규모 등이 한정된 보험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함으로써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다.<개정 2020. 12. 8.>
 - 1.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을 하는 보험회사(제2호에 따른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는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 2.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보험금의 상한액,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1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③ 외국보험회사가 대한민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기금을 제1항 또는 제 2항의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10조(보험업 겸영의 제한)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兼營)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 1. 생명보험의 재보험 및 제3보험의 재보험
- 2. 다른 법령에 따라 겸영할 수 있는 보험종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

- 제11조(보험회사의 겸영업무) 보험회사는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하려면 그 업무를 시작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보험회사가 할 수 있도록 한 업무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으로서 해당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
 -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금융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전문개정 2010. 7. 23.]

- 제11조의2(보험회사의 부수업무) ① 보험회사는 보험업에 부수(附隨)하는 업무를 하려면 그 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공고된 다른 보험회사의 부수업무(제3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와 같은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부수업무를 할수 있다. <개정 2020. 12. 8.>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8.>
 - ③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하는 부수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0. 12. 8.>
 - 1.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 2. 보험계약자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 ④ 제3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8.>
 -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받은 부수업무 및 제3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8.>

[본조신설 2010. 7. 23.]

제11조의3(겸영업무·부수업무의 회계처리) 보험회사가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다른 금융업 또는 부수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보험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본조신설 2010. 7. 23.]

[제목개정 2015. 7. 24.]

- 제12조(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① 외국보험회사, 외국에서 보험대리 및 보험중개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 밖에 외국에서 보험과 관련된 업을 하는 자(이하 "외국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보험시장에 관한 조사 및 정보의 수집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국내에 사무소(이하 "국내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외국보험회사등이 제1항에 따라 국내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국내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보험업을 경영하는 행위
- 2.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
- 3. 국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방법에 의하여 보험시장의 조사 및 정보의 수집을 하는 행위
- 4. 그 밖에 국내사무소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④ 국내사무소는 그 명칭 중에 사무소라는 글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 ⑤ 금융위원회는 국내사무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국내사무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3장 보험회사 <개정 2010. 7. 23.>

제1절 삭제 <2015. 7. 31.>

제13조 삭제 <2015. 7. 31.>

제14조 삭제 <2015. 7. 31.>

제15조 삭제 <2015. 7. 31.>

제16조 삭제 <2015. 7. 31.>

제17조 삭제 <2015. 7. 31.>

제2절 주식회사 <개정 2010. 7. 23.>

- 제18조(자본감소) ① 보험회사인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라 한다)가 자본감소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감소를 결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감소를 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③ 자본감소에 관하여는 제141조제2항 제3항, 제149조 및 제15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19조 삭제 <2015. 7. 31.>

제20조(조직 변경) ① 주식회사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상호회사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상호회사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총액을 300억원 미만으로 하거나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손실 보전(補塡)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21조(조직 변경 결의) ① 주식회사의 조직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22조(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 통지) ① 주식회사가 조직 변경을 결의한 경우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 의 요지와 재무상태표를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적힌 질권자(質權者)에게는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4. 20.>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1조제2항·제3항과「상법」제232조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0, 7, 23.]
- **제23조(조직 변경 결의 공고 후의 보험계약)** ① 주식회사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 이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면 보험계약자가 될 자에게 조직 변경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리고 그 승낙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승낙을 한 보험계약자는 조직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는 보험계약자가 아닌 자로 본다.

- 제24조(보험계약자 총회의 소집) ① 제22조제1항의 공고에 대하여 제14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이의를 제출한 보험계약자의 수와 그 보험금이 제141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는 「상법」제 232조에 따른 절차가 끝나면 7일 이내에 보험계약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보험계약자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는 「상법」제35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 제25조(보험계약자 총회 대행기관) ① 주식회사는 조직 변경을 결의할 때 보험계약자 총회를 갈음하는 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자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구성방법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 **제26조(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방법)** ① 보험계약자 총회는 보험계약자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② 보험계약자총회에 관하여는 제55조와「상법」제363조제1항·제2항, 제364조, 제367조, 제368조제3항·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27조(보험계약자 총회에서의 보고) 주식회사의 이사는 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험계약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 제28조(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 등) ① 보험계약자 총회는 정관의 변경이나 그 밖에 상호회사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결의는 제1항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으로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 제2항을 준용한다.
 - ④ 제1항의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제3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 제29조(조직 변경의 등기) ① 주식회사가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주식회사는 해산의 등기를 하고 상호회사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
 -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정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제21조제1항의 결의
 - 2. 제22조제1항의 공고
 - 3. 제28조의 결의 및 동의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 4. 제141조제3항의 이의(異義)
- 5. 「상법」제232조에 따른 절차를 마쳤음을 증명하는 내용

제30조(조직 변경에 따른 입사) 주식회사의 보험계약자는 조직 변경에 따라 해당 상호회사의 사원이 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31조(「상법」등의 준용) 주식회사의 조직 변경에 관하여는 제145조와「상법」제40조, 제339조, 제340조제1항 · 제 2항, 제439조제1항, 제445조 및 제4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상법」제446조 중 "제192조"는 "제238조"로 본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32조(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 ① 보험계약자나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식회사의 자산에서 우선하여 취득한다.

② 제108조에 따라 특별계정이 설정된 경우에는 제1항은 특별계정과 그 밖의 계정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33조(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① 보험계약자나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주식회사가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예탁한 자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3절 상호(相互)회사 <개정 2010. 7. 23.>

제1관 설립 <개정 2010. 7. 23.>

제34조(정관기재사항) 상호회사의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1. 취급하려는 보험종목과 사업의 범위
- 2. 명칭
- 3. 사무소 소재지
- 4. 기금의 총액
- 5. 기금의 갹출자가 가질 권리
- 6. 기금과 설립비용의 상각 방법
- 7. 잉여금의 분배 방법
- 8. 회사의 공고 방법
- 9. 회사 성립 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가격과 양도인의 성명
- 10.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전문개정 2010. 7. 23.]

제35조(명칭) 상호회사는 그 명칭 중에 상호회사라는 글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36조(기금의 납입) ① 상호회사의 기금은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납입하지 못한다.

② 기금의 납입에 관하여는 「상법」제295조제1항, 제305조제1항 • 제2항 및 제31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37조(사원의 수) 상호회사는 100명 이상의 사원으로써 설립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 제38조(입사청약서) ① 발기인이 아닌 자가 상호회사의 사원이 되려면 입사청약서 2부에 보험의 목적과 보험금액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회사가 성립한 후 사원이 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발기인은 제1항에 따른 입사청약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이를 비치(備置)하여야 한다.
 - 1. 정관의 인증 연월일과 그 인증을 한 공증인의 이름
 - 2. 제34조 각 호의 사항
 - 3. 기금 갹출자의 이름・주소와 그 각자가 갹출하는 금액
 - 4. 발기인의 이름과 주소
 - 5. 발기인이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그 보수액
 - 6. 설립 시 모집하려는 사원의 수
 - 7. 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가 끝나지 아니하면 입사청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
 - ③ 상호회사 성립 전의 입사청약에 대하여는 「민법」제107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 제39조(창립총회) ① 상호회사의 발기인은 상호회사의 기금의 납입이 끝나고 사원의 수가 예정된 수가 되면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창립총회는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③ 상호회사의 창립총회에 관하여는 제55조와「상법」제363조제1항·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 제40조(설립등기) ① 상호회사의 설립등기는 창립총회가 끝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34조 각 호의 사항
 - 2. 이사와 감사의 이름 및 주소
 - 3. 대표이사의 이름
 - 4. 여러 명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는 이사 및 감사의 공동신청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41조(등기부) 관할 등기소에 상호회사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 **제42조(배상책임)**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상호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동의가 없으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제하지 못한다.
 - 1. 위법한 이익 배당에 관한 의안을 사원총회에 제출하는 행위
 - 2. 다른 이사에게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
 - 3. 그 밖의 부당한 거래를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0. 7. 23.]

제43조(발기인에 대한 소송) 상호회사의 발기인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33조와「상법」제 4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 7. 31.>

[전문개정 2010. 7. 23.]

제44조(「상법」의 준용)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상법」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91조, 제92조, 제171조부터 제173조까지, 제176조, 제177조,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288조, 제289조제3항, 제292조, 제310조부터 제316조까지 및 제322조부터 제3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9, 20.>

[전문개정 2010. 7. 23.]

제45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제72조제1항 · 제2항, 제73조,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90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17조부터 제121조까지 및 제123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45조의2(「상업등기법」의 준용)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제3조, 제5조제2항 · 제3항,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제17조부터 제30조까지,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94조, 제95조, 제102조, 제114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 7. 23.]

제2관 사원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10. 7. 23.>

제46조(간접책임) 상호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47조(유한책임) 상호회사의 채무에 관한 사원의 책임은 보험료를 한도로 한다.

제48조(상계의 금지) 상호회사의 사원은 보험료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相計)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49조(보험금액의 삭감) 상호회사는 정관으로 보험금액의 삭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 제50조(생명보험계약 등의 승계) 생명보험 및 제3보험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승낙을 받아 타인으로 하여금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할 수 있다.
- **제51조(손해보험의 목적의 양도)** 손해보험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회사의 사원이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은 회사의 승낙을 받아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3.]

- 제52조(사원명부) 상호회사의 사원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 사원의 이름과 주소
 - 2. 각 사원의 보험계약의 종류, 보험금액 및 보험료

[전문개정 2010. 7. 23.]

제53조(통지와 최고) 상호회사의 입사청약서나 사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催告)에 관하여는 「상법」제353조를 준용한다. 다만, 보험관계에 속하는 사항의 통지 및 최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3관 회사의 기관 <개정 2010. 7. 23.>

- 제54조(사원총회 대행기관) ① 상호회사는 사원총회를 갈음할 기관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에 대하여는 사원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5조(의결권)** 상호회사의 사원은 사원총회에서 각각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6조(총회소집청구권) ① 상호회사의 100분의 5 이상의 사원은 회의의 목적과 그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에 게 제출하여 사원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상법」제36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 제57조(서류의 비치와 열람 등) ① 상호회사의 이사는 정관과 사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각 사무소에, 사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상호회사의 사원과 채권자는 영업시간 중에는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고, 회사가 정한 비용을 내면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58조(상호회사의 소수사원권의 행사)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 총수"는 "사원 총수"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사원"으로 본다.

<개정 2015. 7. 31.>

[전문개정 2010. 7. 23.]

- 제59조(「상법」등의 준용) ① 상호회사의 사원총회에 관하여는 「상법」제362조, 제363조제1항 · 제2항, 제364조, 제365조제1항 · 제3항, 제367조, 제368조제1항 · 제3항 · 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5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상호회사의 이사에 관하여는 「상법」제382조, 제383조제2항·제3항,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89조, 제393조, 제395조, 제398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및 제408조를 준용한다.
 - ③ 상호회사의 감사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33조와「상법」제382조,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94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10조부터 제412조까지, 제412조의2부터 제412조의 4까지, 제413조의 및 제414조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15. 7. 31.>

[전문개정 2010. 7. 23.]

제4관 회사의 계산 <개정 2010. 7. 23.>

- **제60조(손실보전준비금)** ① 상호회사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의 잉여금 중에서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총액과 매년 적립할 최저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 제61조(기금이자 지급 등의 제한) ① 상호회사는 손실을 보전하기 전에는 기금이자를 지급하지 못한다.
 - ② 상호회사는 설립비용과 사업비의 전액을 상각(償却)하고 제60조제1항에 따른 준비금을 공제하기 전에는 기금의 상각 또는 잉여금의 분배를 하지 못한다.
 - ③ 상호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기금이자의 지급, 기금의 상각 또는 잉여금의 분배를 한 경우에는 회사의 채권자는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2조(기금상각적립금) 상호회사가 기금을 상각할 때에는 상각하는 금액과 같은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63조(잉여금의 분배) 상호회사의 잉여금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 사업연도 말 당시 사원에게 분배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64조(「상법」의 준용) 상호회사의 계산에 관하여는 「상법」제447조, 제447조의2부터 제447조의4까지, 제448조부터 제450조까지, 제452조 및 제46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5관 정관의 변경 <개정 2010. 7. 23.>

제65조(정관의 변경) ① 상호회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55조와「상법」제363조제1항·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 및 제43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6관 사원의 퇴사 <개정 2010. 7. 23.>

제66조(퇴사이유) ① 상호회사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퇴사한다.

- 1.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
- 2. 보험관계의 소멸
- ② 상호회사의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제28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 **제67조(환급청구권)** ① 상호회사에서 퇴사한 사원은 정관이나 보험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에 따른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퇴사한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1항의 금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3.]

- **제68조(환급기한 및 시효)** ① 상호회사에서 퇴사한 사원의 권리에 따른 금액의 환급은 퇴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② 퇴사원의 환급청구권은 제1항의 기간이 지난 후 2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7관 해산 <개정 2010. 7. 23.>

- **제69조(해산의 공고)** ① 상호회사가 해산을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제13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5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70조(「상법」의 준용) ① 상호회사에 관하여는「상법」제174조제3항, 제175조제1항, 제228조, 제232조, 제234조부터 제240조까지, 제522조제1항・제2항, 제526조제1항, 제527조제1항・제2항, 제528조제1항 및 제529조를 준용한다.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 경우「상법」제528조제1항 중 "제317조"는 "「보험업법」제40조"로 본다.
- ② 「상법」제175조제1항에 따른 선임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관 청산 <개정 2010. 7. 23.>

제71조(청산) 상호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가 아니면 이 관의 규정에 따라 청산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72조(자산 처분의 순위 등) ① 상호회사의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회사자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 1. 일반채무의 변제
- 2. 사원의 보험금액과 제158조제2항에 따라 사원에게 환급할 금액의 지급
- 3. 기금의 상각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후 남은 자산은 상호회사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잉여금을 분배할 때와 같은 비율로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73조(「상법」등의 준용) 상호회사의 청산에 관하여는 제56조, 제57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33조와 「상법」제245조, 제253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9조, 제260조 단서, 제264조, 제328조, 제362조, 제367조, 제373조 제2항,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제389조, 제394조, 제398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 1항,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제412조, 제412조의2부터 제412조의4까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8조부터 제450조까지, 제531조부터 제537조까지, 제539조제1항, 제540조 및 제54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 7. 31.> [전문개정 2010. 7. 23.]

제4절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 <개정 2010. 7. 23.>

- 제74조(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대하여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합병, 영업양도 등으로 소멸한 경우
 - 2. 위법행위, 불건전한 영업행위 등의 사유로 외국감독기관으로부터 제134조제2항에 따른 처분에 상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 3. 휴업하거나 영업을 중지한 경우
 - ② 금융위원회는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당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보험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영업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 3. 24.>
 -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3.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그 본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
 - 4. 그 밖에 해당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보험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은 그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75조(국내자산 보유의무) ①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은 대한민국에서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제120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을 대한민국에서 보유하여야 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보유하여야 하는 자산의 종류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 제76조(국내 대표자) ①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관하여는「상법」제209조를 준용한다.
 - ②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대표자는 퇴임한 후에도 후임 대표자의 이름 및 주소에 관하여「상법」제614조제3항에 따른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하여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③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대표자는 이 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임원으로 본다.

- 제77조(잔무처리자) ①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보험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대한 민국에서의 보험업을 폐업하거나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잔무(殘務)를 처리할 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잔무처리자에 관하여는 제76조제1항 및 제157조를 준용한다.
 -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16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 제78조(등기) ① 상호회사인 외국보험회사(이하 "외국상호회사"라 한다)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 ② 외국상호회사 국내지점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상호회사 국내지점의 대표자는 신청서에 대한민국에서의 주된 영업소와 대표자의 이름 및 주소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대한민국에 주된 영업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2. 대표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3. 회사의 정관이나 그 밖에 회사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
 -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해당 외국상호회사 본국의 관할 관청이 증명한 것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 **제79조(「상법」의 준용)** ① 외국상호회사 국내지점에 관하여는「상법」제1편제3장(제16조는 제외한다), 제22조・제 23조 및 제24조, 제26조, 제1편제5장・제6장, 제2편제5장(제90조는 제외한다) 및 제177조를 준용한다.
 - ②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이 대한민국에 종된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을 위하여 모집을 하는 자가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상법」제619조 및 제620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80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외국상호회사의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제72조제3항, 제101조제 2항 및 제12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 제80조의2(「상업등기법」의 준용) 외국상호회사의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제3조, 제5조제2항·제3항,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53조, 제5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부터 제119조까지, 제121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 7. 23.]
- 제81조(총회 결의의 의제)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제1항 및 제146조제2항을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적용할 경우 제141조제1항 중 "제138조에 따른 결의를 한 날"은 "이전계약서를 작성한 날"로, 제142조 및 제144조제1항 중 "주주 총회등의 결의가 있었던 때"는 각각 "이전계약서를 작성한 때"로, 제146조제2항 중 "보험계약 이전의 결의를 한 후 "는 "이전계약서를 작성한 후"로 본다.

[전문개정 2010. 7. 23.]

- **제82조(적용 제외)** ①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제8조, 제138조, 제139조 중 해산 및 합병에 관한 부분, 제 141조제4항, 제148조, 제149조, 제151조부터 제154조까지,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7. 31.>
 - ②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제8장 중 총회의 결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모집 <개정 2010. 7. 23.>

제1절 모집종사자 <개정 2010. 7. 23.>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 ①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1. 보험설계사
- 2. 보험대리점
- 3. 보험중개사
- 4.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직원
- ② 제91조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①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이 절에서 "보험회사등" 이라 한다)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개정 2018. 4. 17., 2020. 3. 24.>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 는 자
- 5.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7.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과징금·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9.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 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③ 보험설계사의 구분・등록요건・영업기준 및 영업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85조(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① 보험회사등은 다른 보험회사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한다.
 - ② 보험설계사는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등 이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을 하지 못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생명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 2. 손해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 3.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 집을 하는 경우
 - ④ 제3항을 적용받는 보험회사 및 보험설계사가 모집을 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 **제85조의2(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① 보험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0. 7. 23.]
- 제85조의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① 보험회사등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0. 15.>
 - 1. 보험모집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 2.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 3.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 4.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 5.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 6.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 7.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
 - 8.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 대납(代納)을 강요하는 행위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행위
 - ②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이하 "보험협회"라 한다)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등의 불공정한 모집위탁행위를 막기 위하여 보험회사등이 지켜야 할 규약을 정할 수 있다.
 - ③ 보험협회가 제2항에 따른 규약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4. 2. 6.>

[본조신설 2010. 7. 23.]

- **제85조의4(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① 보험회사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 2.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 3.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 마련. 다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 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전담 고충처리위원의 선임 또는 위촉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 4. 그 밖에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② 직원은 보험회사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보험회사는 제2항에 따른 직원의 요구를 이유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2. 등록 당시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4.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
- 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 1. 14., 2020. 3. 24.>
-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 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5. 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④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적은 문서로 보험설계사 및 해당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보험회사등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①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한다.
-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 3.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
- 4.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자
- 5. 그 밖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보험대리점으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 ④ 보험대리점의 구분, 등록요건, 영업기준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87조의2(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인 보험대리점(이하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의 임원(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15. 7. 31., 2020. 3. 24.>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 2. 제8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7. 23.]

- **제87조의3(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①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또는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 ②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상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0. 7. 23.]

-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2. 등록 당시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87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4. 제87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경우
 - 5. 제101조를 위반한 경우
 -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
 - 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 1. 14., 2020. 3. 24.>
 -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 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7. 해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③ 보험대리점에 관하여는 제8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 **제89조(보험중개사의 등록)** ① 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중개사가 되지 못한다.
 -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자
 - 3.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
 - 4. 제8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 5.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 체결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
 - 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험 가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보험중개사의 구분, 등록요건, 영업기준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 제89조의2(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인 보험중개사(이하 "법인보험중개사"라 한다)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15. 7. 31., 2020. 3. 24.>
 -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 2. 제8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7. 23.]

- 제89조의3(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 ① 법인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또는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 ② 법인보험중개사는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상 주요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0. 7. 23.]

- 제9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제8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일시적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등록 당시 제8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9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3의2. 제89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경우
 - 4. 제101조를 위반한 경우
 -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 1. 14., 2020. 3. 24.>
 -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 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7. 해당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③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8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91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다.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 1.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라 한다)이 모집할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금융기관에서의 판매 용이성(容易性), 불공정거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방법, 모집에 종사하는 모집인의 수, 영업기준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2(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대한 특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대하여는 제87조의2제1항 및 제87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0. 7. 23.]

- 제92조(보험중개사의 의무 등) ①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때 그 중개와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적고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비치하여 보험계약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으며,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면서 보험회사·보험설계사·보험 대리점·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겸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7. 23.]

- 제93조(신고사항) ①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제84조・제87조 및 제89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
 - 2.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3. 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
 - 4. 개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
 - 5.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6.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그 단체가 소멸한 경우
 - 7.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소속 보험설계사와 보험모집에 관한 위탁을 해지한 경우
 - 8. 제85조제3항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한 경우나,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생명보험계약의 모집과 손해보험계약의 모집을 겸하게 된 경우
 - ②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 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청산인·업무집행임원이었던 자 또는 파산관재인, 같은 항 제6호의 경우에는 그 관리인이었던 자가 각각 제1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은 "보험설계사 "로 본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94조(등록수수료) 제84조・제87조 및 제89조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2절 모집 관련 준수사항 <개정 2010. 7. 23.>

- **제95조(보험안내자료)** ①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이하 "보험안내자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한다.
 - 1.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또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이름・상호나 명칭
 - 2.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 의무에 관한 주요 사항
 - 3. 보험약관으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 3의2.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 4.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5.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 6. 그 밖에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적는 경우에는 제1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것을 적지 못한다.
 - ③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적지 못한다. 다만 ,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방송·인터넷 홈페이지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모집을 위하여 보험회사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과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① 삭제 <2020. 3. 24.>

- ② 삭제 < 2020. 3. 24.>
-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보험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절차 및 지급내역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7. 23.]

제95조의3 삭제 <2020. 3. 24.>

제95조의4 삭제 <2020. 3. 24.>

- 제95조의5(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의 동의를 얻어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한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의 중복계약 체결의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7. 23.]

- 제96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①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을 하는 자는 제83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7.>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 1.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 2.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 3.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을 하는 방법과 제2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한 청약 철회 등을 하는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5. 12. 22.>

- 1. 삭제 < 2020. 3. 24.>
- 2. 삭제 < 2020. 3. 24.>
- 3. 삭제 < 2020. 3. 24.>
- 4. 삭제 < 2020. 3. 24.>
-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이 조에서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 6.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 7.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 8.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 9.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의 금전대차의 관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행위
- 10. 정당한 이유 없이「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
- 11.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② 삭제<2020. 3. 24.>
- ③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제 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1.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 다만,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 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 ④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의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하여야 한다.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는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0. 15.>

- 1. 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 4.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 5.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 6.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 7. 「상법」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전문개정 2010. 7. 23.]

-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① 보험회사는 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
 - 2. 보험회사가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보험사와 공동으로 원보험계약(原保險契約)을 인수하거나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의 모집조직(외국의 법령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이용하여 원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삭제<2020. 3. 24.>
 - ③ 보험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한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7. 23.]

-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①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3. 24.>
 - 1. 삭제 < 2020. 3. 24.>
 - 2.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하 이 조에서 "대출등"이라 한다)을 받는 자의 동의를 미리 받지 아니하고 보험료를 대출등의 거래에 포함시키는 행위
 - 3. 해당 금융기관의 임직원(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
 - 4. 해당 금융기관의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을 하는 행위
 - 5.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미리 그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 6. 그 밖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와 비슷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②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해당 금융기관이 대출등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대출등을 받는 자가 그 금융기관이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대출등을 받는 데 영향이 없음을 알릴 것
 - 2. 해당 금융기관이 보험회사가 아니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라는 사실과 보험계약의 이행에 따른 지급책임 은 보험회사에 있음을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에게 알릴 것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 3. 보험을 모집하는 장소와 대출등을 취급하는 장소를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가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리할 것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비슷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되려는 자는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조건으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해당 금융기관을 계약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할인을 요구하거나 그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자금지원 및 보험료 등의 예탁을 요구하는 행위
- 2.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실을 보험회사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 3. 그 밖에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 등을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④ 제3항에 따른 행위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 **제101조(자기계약의 금지)** ①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②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累計額)이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7. 23.]

- 제101조의2(「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보험회사 임직원의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 제2항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보험회사 임직원"으로 본다.
 - ② 보험회사 임직원의 광고 관련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부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보험회사 임직원"으로 본다.
 - ③ 보험회사 임직원의 제3자에 대한 모집위탁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부분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은 "보험회사 임직원은"으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대리·중개하는 업무"는 "보험회사 임직원의 모집 업무"로 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제3절 보험계약자의 권리 <개정 2010. 7. 23.>

제102조 삭제 <2020. 3. 24.>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7. 23.]

-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4. 1. 14.]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02조의4 삭제 <2020. 3. 24.>

제102조의5 삭제 <2020. 3. 24.>

- 제102조의6(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① 실손의료보험(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제3보험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보험계약자가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의료법」제21조 및「약사법」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 방법과 절차, 전송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

[시행일: 2025. 10. 25.] 제102조의6(「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과「약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에 대한 개정규정)

- 제102조의7(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보험회사는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이하 "전송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거나 직접 수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 ④ 보험회사(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전송대행기관을 포함한다)는 요양기관 등과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하여서 는 아니 된다.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위탁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

제103조(영업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보험계약자나 보험금을 취득할 자가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체결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제89조제3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5장 자산운용 <개정 2010. 7. 23.>

제1절 자산운용의 원칙 <개정 2010. 7. 23.>

- 제104조(자산운용의 원칙) ①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운용할 때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 야 한다.
 - ② 보험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105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의 소유
- 2.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을 통한 부동산의 소유
- 3. 상품이나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 4.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해당 보험회사의 주식을 사도록 하기 위한 대출
- 5.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정치자금의 대출
- 6. 해당 보험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보험약관에 따른 대출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 7.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① 보험회사는 일반계정(제10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특별계정을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에 속하는 자산과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계정(이하이 조에서 특별계정이라 한다)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계정의 자산으로서 자산운용의 손실이 일반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일반계정에 포함하여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 5. 19., 2022. 12. 31.>

- 1.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3
 -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5
- 2.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7
 -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0
- 3.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그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12
 -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5
- 4. 동일한 개인·법인, 동일차주 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대한 총자산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거액 신용공여의 합계액
 -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20
 -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20
- 5.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 가. 일반계정: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자기자본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자산의 100분의 2)
 -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2
- 6.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 가. 일반계정: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자산의 100분의 3)
 -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3
- 7. 동일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 가. 일반계정: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4
- 8. 부동산의 소유
 -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25
 -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5
- 9.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이나 외국부동산의 소유(외화표시 보험에 대하여 지급보험금과 같은 외화로 보유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한도로 자산운용비율의 산정 대상에 포함하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지 아니한다)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50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50

10. 삭제 < 2022. 12. 31.>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운용비율은 자산운용의 건전성 향상 또는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인하하거나, 발행주체 및 투자수단 등을 구분하여 별도로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특별계정에 대하여는 일반계정에 포함하여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107조(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2. 31.>

- 1. 보험회사의 자산가격의 변동 등 보험회사의 의사와 관계없는 사유로 자산상태가 변동된 경우
- 2.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 준을 말한다)의 변경으로 보험회사의 자산 또는 자기자본 상태가 변동된 경우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가. 보험회사가 제123조에 따라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출자전환 또는 채무재조정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는 그 비율을 초과하게 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106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2, 12, 31.>
-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 1년
- 2.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 3년

[전문개정 2010. 7. 23.]

-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각각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 1.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하는 계약
 -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 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계약
 - 3. 변액보험계약(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계약
 - ②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은 다른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및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 야 한다.<개정 2015. 7. 24.>
 - ③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이익을 그 계정상의 보험계약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
 - ④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운용방법 및 평가, 이익의 분배, 자산운용실적의 비교·공시,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의결권 행사의 제한 등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09조(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제11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이 의제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회사의 주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

[전문개정 2010. 7. 23.]

제110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① 보험회사는 다른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회사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4. 5.>

- 1. 제106조와 제108조에 따른 자산운용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서로 교차하여 보유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 2. 「상법」제341조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3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 교차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
- 3.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② 보험회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용공여를 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처분 또는 공여한 신용의 회수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110조의2 삭제 <2020. 3. 24.>

- 제110조의3(금리인하 요구) ①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 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 ② 보험회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인 보험회사의 자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7. 24.>
 - 1. 대주주가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
 - 2. 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에 대하여 매매·교환·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을 하는 행위
 - ② 보험회사는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거나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 ③ 보험회사는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그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
 - 2.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
 - 3.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
 - ④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나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⑤ 보험회사의 대주주는 해당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7. 31.>

법제처 28 국가법령정보센터

-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해당 보험회사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33조제7항(제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주주 또는 출자자와 담합(談合)하여 해당 보험회사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 3. 제10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 4.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보험회사에게 대주주의 채권 및 주식을 소유하게 하는 행위
- 5. 그 밖에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⑥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대주주(회사만 해당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가 부실하여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대주주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 금지
- 2.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 취득 금지
- 3. 그 밖에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거래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112조(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 또는 그 대주주가 제106조 및 제111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113조(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 보험회사는 타인을 위하여 그 소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보증을 할 수 없다. 다만, 이 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보증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114조(자산평가의 방법 등) 보험회사가 취득·처분하는 자산의 평가방법, 채권 발행 또는 자금차입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 제114조의2(사채의 발행 등) ① 보험회사는 제123조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 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인 보험회사 (이하 "주권비상장보험회사"라 한다)만이 할 수 있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이하 "예정사유"라 한다)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의 발행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예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의 발행
 - 3. 「상법」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예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이 상장금융지주회사(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인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과 교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의 발행
 - 4. 「상법」에 따른 사채의 발행

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의 발행 및 자금의 차입
- ② 제1항에 따른 사채발행 및 자금차입에 관한 조건, 절차 및 제한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31.]

- 제114조의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 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
 - ②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6제1항·제2항·제4항, 제165조의9,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12. 31.]

- 제114조의4(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① 주권비상장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려면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는 각각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1.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경우 : 이사회의 의결
 - 2. 상장금융지주회사의 경우 : 이사회의 의결과「상법」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
 - ② 주권비상장보험회사는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 ③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는 주권비상장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경우「상법」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각각의 본점 소재지에서 금융지주회사주 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 의결에 반대하는 상장금융지주회사의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상장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의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상장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매수기간 및 매수가액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상법」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는 주권비상장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날부터 제6항에 따른 효력발생일과 만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전환 및 교환으로 인하여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를 유보하여야 한다.
 - ⑥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권비상장보험회사 주식으로의 전환 및 그 전환된 주식의 상장금 융지주회사 주식과의 교환은 예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그 효력이 발 생한다.
 - ⑦「상법」제3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권비상장보험회사는 제6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⑧ 주권비상장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이후 상장금융지주회사가 주권비상 장보험회사를 지배(「금융지주회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배를 말한다)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때까지 발행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중 예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중 예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예정사유 및 전환의 조건이 동일한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계약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⑨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변경등기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의 본점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 1. 제6항에 따른 전환ㆍ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같은 항에 따른 효력발생일부터 2주일 이내
 - 2. 제8항에 따른 변경으로 인한 변경등기: 같은 항에 따라 변경되는 날부터 2주일 이내

법제처 30 국가법령정보센터

- ⑩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제424조, 제424조의2 및 제429조부터 제432조까지의 규정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제1항・제2항・제4항, 제165조의9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하며,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권비상장보험회사 주식으로의 전환 및 고전환된 주식의 상장금융지주회사 주식과의 교환에 관하여는 「상법」제339조, 제348조, 제350조제2항, 제360조의4, 제360조의7, 제360조의11, 제360조의12 및 제360조의14를 준용한다.
- ①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 예정사유의 구체적인 기준, 그 밖에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31.]

- 제114조의5(의결권 제한 등) ① 제11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상장금융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되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대주주가 되는 자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② 제1항에서 대주주가 되는 자는 주식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31조제 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31.]

제2절 자회사 <개정 2010. 7. 23.>

- 제115조(자회사의 소유)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다만, 그 주식의 소유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 등을 받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그 주식의 소유에 관한 사항을 요건으로 설립 허가・인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3. 11,, 2020. 2. 4,, 2020. 12. 8.>
 -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경영하는 금융업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
 - 3. 보험계약의 유지・해지・변경 또는 부활 등을 관리하는 업무
 - 4. 그 밖에 보험업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업의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신설 2020. 12. 8.>
 -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8.>
 -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대주주가「은행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인 경우에는 그보험회사는「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없다.<개정 2020. 12. 8.>
 - ⑤ 보험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업무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 12. 8.>
 - 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8.>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 신고 또는 보고의 요건,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전문개정 2010. 7. 23.]

제116조(자회사와의 금지행위) 보험회사는 자회사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제처 31 국가법령정보센터

- 1. 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교환·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을 하는 행위
- 2.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 및 자회사가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
- 3. 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보험약관에 따른 대출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 제117조(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 ① 보험회사는 자회사를 소유하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자회사의 정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보험회사는 자회사의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회사의 재무상태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20.>
 - ③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계산 <개정 2010. 7. 23.>

- 제118조(재무제표 등의 제출) ① 보험회사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그 장부를 폐쇄하여야 하고 장부를 폐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 및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보험회사는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보험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3.]
- 제119조(서류의 비치 등) 보험회사는 제118조제1항에 따른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금융 위원회에 제출하는 날부터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거나 전자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 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적정한 계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자산 및 비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3.]

- 제120조의2(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① 보험회사가 경영하는 보험종목의 특성 또는 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 또는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부터 제120조제1항에 따라 계상된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검증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 제121조(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① 보험회사는 배당보험계약(해당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로 약정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1조의2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20. 12. 8.>

법제처 32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배당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기준은 배당보험계약자의 이익과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 7. 24.]

제121조의2(배당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보험회사는 배당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계약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산 또는 손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10. 7. 23.] [제목개정 2015. 7. 24.]

제122조(재평가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보험회사가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한 경우 그 재평가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은 같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처분 이외에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을 위하여도 처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7장 감독 <개정 2010. 7. 23.>

- 제123조(재무건전성의 유지)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경영건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명령,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3.]

- 제124조(공시 등)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 ② 보험협회는 보험료·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비교·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1.>
 - ③ 보험협회가 제2항에 따른 비교·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상품공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④ 보험회사는 제2항에 따른 비교・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보험협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⑤ 보험협회 이외의 자가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 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교·공시가 거짓이거나 사실과 달라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의 중단이나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125조(상호협정의 인가) ① 보험회사가 그 업무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기 위하여 다른 보험회사와 상호협정을 체결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로써 갈음할 수 있다.

법제처 33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협정의 체결·변경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그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따를 것을 명할 수 있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호협정의 체결·변경 또는 폐지의 인가를 하거나 협정에 따를 것을 명하려면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6조(정관변경의 보고)** 보험회사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 제127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① 보험회사는 취급하려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2020. 12. 8.>
 - 1. 법령의 제정 개정에 따라 새로운 보험상품이 도입되거나 보험상품 가입이 의무가 되는 경우
 - 2. 삭제 < 2020. 12. 8.>
 - 3.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험회사에 대하여 취급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 12. 8.>
 -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8.>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출의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12. 8.>

[전문개정 2010. 7. 23.]

[제목개정 2020. 12. 8.]

- 제127조의2(기초서류의 변경 권고)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2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기초서류의 내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한 기초서류에 관한 자료의 내용이 제128조의3 및 제129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서류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권고는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7. 23.]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7. 23.]

- 제128조(기초서류에 대한 확인)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27조제2항에 따라 기초서류를 신고할 때 필요하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1.>
 -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27조제2항에 따라 기초서류를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대하여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리업자(이하 "독립계리업자"라 한다)의 검증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2. 12. 31.>

[전문개정 2010. 7. 23.]

- 제128조의2(기초서류 관리기준) ①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지켜야 할 절차와 기준(이하 "기초서 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
 - ② 기초서류관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 기초서류 작성・변경의 절차 및 기준
- 2.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 · 외부 검증 절차 및 방법
- 3. 기초서류 작성 오류에 대한 통제 및 수정 방법
- 4. 기초서류 작성 및 관리과정을 감시·통제·평가하는 방법 및 관련 임직원 또는 제181조제2항에 따른 선임계리 사의 역할과 책임
- 5. 그 밖에 기초서류관리기준의 제정 개정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보험회사는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해당 기준이나 그 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기준의 변경 또는 업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기초서류관리기준의 작성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7. 23.]

제128조의3(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 ①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 2. 정당한 사유 없는 보험계약자의 권리 축소 또는 의무 확대 등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 3.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 준에 적합할 것
- ②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할 때 그 내용이 제1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 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켜 작성·변경한 것으로 추정(推定)한다.

[본조신설 2010. 7. 23.]

제128조의4(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소비자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보험소비자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2020. 5. 19.>

- 1. 보험약관
- 2. 보험안내자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험약관과 보험안내자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약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험소비자등의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 5. 19., 2020. 5. 19.>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대행기관은 조사대상 보험약관등에 대하여 보험소비자등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19,, 2020. 5. 19.>
- ④ 보험약관등의 이해도 평가에 수반되는 비용의 부담, 평가 시기, 평가 방법 등 평가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개정 2020. 5. 19.>

[본조신설 2010. 7. 23.]

[제목개정 2020. 5. 19.]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大數)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6. 3. 29.>

- 1. 보험요율이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給付)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
- 2. 보험요율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칠 정도로 낮지 아니할 것
- 3. 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
- 4. 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인 경우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와 비교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일 것

[전문개정 2010. 7. 23.]

제130조(보고사항)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제처 35 국가법령정보센터

- 1. 상호나 명칭을 변경한 경우
- 2. 삭제 < 2015. 7. 31.>
- 3. 본점의 영업을 중지하거나 재개(再開)한 경우
- 4.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 5.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만큼 변동된 경우
- 6. 그 밖에 해당 보험회사의 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7. 23.]
- 제131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 2.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 예탁
 - 3. 자산의 장부가격 변경
 -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
 -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 그 밖의 사정의 변경으로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거나 보험회사의 기초서류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기초서류의 변경 또는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장래에 향하여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게 할 수 있다.
 -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변경명령을 받은 기초서류 때문에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따라 납 입된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주거나 보험금을 증액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보험회사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 제131조의2(보험금 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파산 또는 보험금 지급불능 우려 등 보험계약 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 제한,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7. 23.]

제132조(준용) 국내사무소·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국내사무소"·"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본다.

[전문개정 2010. 7. 23.]

- 제133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이 법에서 정하는 감독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주주 현황, 그 밖에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② 보험회사는 그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③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회사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자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 7. 31.>

법제처 36 국가법령정보센터

-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회사가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그 보험회사를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나 그 밖에 경영건전성과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 10. 31.>

-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 ·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의 조치를 하게 할수 있다. <개정 2015. 7. 31, 2017. 4. 18, 2020. 3. 24, 2020. 12. 8.>
 - 1.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135조에서 같다)의 해임권고・직무정지
 - 4.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 7. 31,, 2020. 3. 24.>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 2. 허가의 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 3.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4.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른 조치,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3.]

- 제135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134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 장을 포함한다)는 보험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보험회사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보험회사의 장은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알리고, 그 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10. 7. 23.]

제136조(준용) ① 국내사무소・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133조 및 제1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각각 "국내사무소"・"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본다.

법제처 37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 보험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자회사에 관하여는 제1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자회사"로 본다.
- ③ 보험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 1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위탁받은 자"로 본다.

제8장 해산 • 청산 <개정 2010. 7. 23.>

제1절 해산 <개정 2010. 7. 23.>

제137조(해산사유 등)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5. 7. 31.>

- 1.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
- 2.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등"이라 한다)의 결의
- 3. 회사의 합병
- 4. 보험계약 전부의 이전
- 5. 회사의 파산
- 6. 보험업의 허가취소
- 7. 해산을 명하는 재판
- ② 보험회사가 제1항제6호의 사유로 해산하면 금융위원회는 7일 이내에 그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囑託)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0.>
- ③ 등기소는 제2항의 촉탁을 받으면 7일 이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138조(해산·합병 등의 결의) 해산·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에 관한 결의는 제39조제2항 또는「상법」제434조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 제139조(해산·합병 등의 인가) 해산의 결의·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제140조(보험계약 등의 이전)** ① 보험회사는 계약의 방법으로 책임준비금 산출의 기초가 같은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여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할 수 있다.
 -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에서 회사자산을 이전할 것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보험회사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은 유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 제141조(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①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는 제138조에 따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계약 이전의 요지와 각 보험회사의 재무상태표를 공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2021. 4. 20.>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및 통지에는 이전될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로서 이의가 있는 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덧붙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8.>
 - ③ 제2항의 기간에 이의를 제기한 보험계약자가 이전될 보험계약자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거나 그 보험금액이 이전될 보험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못한다. 제143조에 따라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하는 경우에 이의를 제기한 보험계약자로서 그 변경을 받을 자가 변경을 받을 보험계약자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거나 그 보험금액이 변경을 받을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제처 38 국가법령정보센터

④ 상호회사가 제54조제1항의 기관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 이전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목개정 2020. 12. 8.]

제142조(신계약의 금지)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는 주주총회등의 결의가 있었던 때부터 보험계약을 이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게 될 때까지 그 이전하려는 보험계약과 같은 종류의 보험계약을 하지 못한다. 다만, 보험회사의 부실에 따라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경우가 아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

[전문개정 2010. 7. 23.]

- **제143조(계약조건의 변경)**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전계약의 내용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1. 계산의 기초의 변경
 - 2. 보험금액의 삭감과 장래 보험료의 감액
 - 3. 계약조항의 변경

[전문개정 2010. 7. 23.]

- 제144조(자산 처분의 금지 등) ① 제143조에 따라 보험금액을 삭감하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는 주주총회등의 결의가 있었던 때부터 보험계약을 이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게 될 때까지 그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려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보험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또는 자산의 보전이나 그 밖의 특별한 필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보험계약이 이전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제1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것에 관하여 이전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액 삭감의 비율에 따라 그 금액을 삭감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제143조에 따라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하는 경우에 그 변경을 하려는 보험회사에 대하여도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보험계약으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변경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145조(보험계약 이전의 공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이전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 7. 23.]

- 제146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보험계약을 이전한 보험회사가 그 보험계약에 관하여 가진 권리와 의무는 보험계약을 이전받은 보험회사가 승계한다. 이전계약으로써 이전할 것을 정한 자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 ② 보험계약 이전의 결의를 한 후 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수지(收支)나 그 밖에 이전할 보험계약 또는 자산에 관하여 발생한 변경은 이전을 받은 보험회사에 귀속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147조(계약 이전으로 인한 입사) 보험계약이 이전된 경우 이전을 받은 보험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 자는 그 상호회사에 입사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 제148조(해산 후의 계약 이전 결의) ① 보험회사는 해산한 후에도 3개월 이내에는 보험계약 이전을 결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5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제처 39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49조(해산등기의 신청) 보험계약의 이전에 따른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이전계약서
- 2. 각 보험회사 주주총회등의 의사록
- 3. 제141조의 공고 및 이의에 관한 서류
- 4. 보험계약 이전의 인가를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0. 7. 23.]

제150조(영업양도・양수의 인가) 보험회사는 그 영업을 양도・양수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 제151조(합병 결의의 공고) ① 보험회사가 합병을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합병계약의 요지와 각 보험회사의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 ② 합병의 경우에는 제1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5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합병은 이의를 제기한 보험계약자나 그 밖에 보험계약으로 발생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전문개정 2010. 7. 23.]

- **제152조(계약조건의 변경)** ① 보험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으로써 그 보험계약에 관한 계산의 기초 또는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하는 경우 그 변경을 하려는 보험회사에 관하여는 제142조 및 제14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 제153조(상호회사의 합병) ① 상호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보험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보험회사는 상호회사이어야 한다. 다만, 합병하는 보험회사의 한 쪽이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보험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보험회사는 주식회사로 할 수 있다.
 - ③ 상호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상법」의 합병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④ 합병계약서에 적을 사항이나 그 밖에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 제154조(합병의 경우의 사원관계) ① 제153조에 따른 합병이 있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보험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보험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에는 합병으로 해산하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는 그 회사에 입사하고,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호회사의 사원은 그 지위를 잃는다. 다만, 보험관계에 속하는 권리와 의무는 합병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주식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주식회사가 승계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상호회사에 입사할 자는 「상법」제526조제1항에 따른 사원총회에서 사원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다만, 합병계약에 따로 정한 것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합병으로 설립되는 상호회사의 창립총회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제55조와「상법」제311조, 제312조, 제316조제2항, 제363조제1항·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155조(정리계획서의 제출) 보험회사가 그 보험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60일 전에 사업 폐업에 따른 정리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4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절 청산 <개정 2010. 7. 23.>

- 제156조(청산인) ① 보험회사가 보험업의 허가취소로 해산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다.
 - ②「상법」제193조·제252조 및 제531조제2항에 따른 청산인은 금융위원회가 선임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 없이 선임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상법」제255조제2항을 준용한다.
 - ④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 1. 감사
 - 2.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 3. 100분의 5 이상의 사원
 - ⑤ 상호회사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사원에 관하여 정관으로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⑥ 금융위원회는 중요한 사유가 있으면 제4항의 청구 없이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157조(청산인의 보수) 제156조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청산 중인 회사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3.]

- 제158조(해산 후의 보험금 지급) ① 보험회사는 제137조제1항제2호 · 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해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보험회사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이나 아직 지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159조(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보험회사에 관하여「상법」제536조제2항을 적용할 때 "법원"은 "금융위원회"로 본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160조(청산인의 감독) 금융위원회는 청산인을 감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청산업무와 자산상황을 검사하고, 자산의 공탁을 명하며, 그 밖에 청산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3.]

- 제161조(해산 후의 강제관리) ① 금융위원회는 해산한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으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자산의 관리를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14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9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 <개정 2010. 7. 23.>

- 제162조(조사대상 및 방법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관계자"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법제처 41 국가법령정보센터

- 2. 공익 또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 1. 조사사항에 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 2. 조사에 필요한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제133조제4항을 준용한다.
- ④ 금융위원회는 관계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관계자가 소속된 단체의 장에게 관계자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63조(보험조사협의회) ① 제162조제1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보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보험조사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조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164조(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 금융위원회는 관계자에 대한 조사실적, 처리결과, 그 밖에 관계자의 위법행위 예방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10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개정 2010. 7. 23.>

제165조(제3자의 보험금 지급보장)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가 보험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166조(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법령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자동차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해보험계약에만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계약자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 제167조(지급불능의 보고) ① 손해보험회사는「예금자보호법」제2조제8호의 사유로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게 보험 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이하 "손해보험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 ② 손해보험회사는「예금자보호법」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보험업 허가취소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 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손해보험협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2.>

[전문개정 2010. 7. 23.]

- **제168조(출연)** ①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입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해보험협회에 출연(出捐)하여야 한다.
 - ② 손해보험회사는 제167조에 따른 지급불능 보고를 한 후 제1항의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납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169조(보험금의 지급) ①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제167조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손해보험 계약의 제3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제처 42 국가법령정보센터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170조(자료 제출 요구)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제168조에 따른 출연금을 산정하고 제169조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손해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3.]

- 제171조(자금의 차입) ① 손해보험협회는 제169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예금자보호법」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② 손해보험회사는 제168조제1항에 따라 그 손해보험회사가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손해보험협회의 차입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172조(출연금 등의 회계처리) 제168조에 따른 출연금 및 제171조에 따른 차입금은 손해보험협회의 일반예산과 구분 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10. 7. 23.] [제목개정 2015. 7. 24.]

제173조(구상권) 손해보험협회는 제169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174조(정산) 손해보험협회는 제168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으로 제169조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고 남거나 부족한 금액이 있는 경우 또는 제173조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로 수입(收入)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11장 보험 관계 단체 등 <개정 2010. 7. 23.>

제1절 보험협회 등 <개정 2010. 7. 23.>

- 제175조(보험협회) ① 보험회사는 상호 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험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보험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보험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개정 2024. 2. 6.>
 - 1. 보험회사 간의 건전한 업무질서의 유지
 - 1의2.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보험회사등이 지켜야 할 규약의 제정ㆍ개정
 - 1의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 간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
 - 2. 보험상품의 비교 · 공시 업무
 - 3.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4.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0. 7. 23.]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이하 "순보험료"라 한다)를 결정하기 위한 요율(이하 "순보험요율"이라 한다)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출하고 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이

법제처 43 국가법령정보센터

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 1. 순보험요율의 산출・검증 및 제공
- 2. 보험 관련 정보의 수집 제공 및 통계의 작성
- 3. 보험에 대한 조사 연구
- 4.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정부기관, 보험회사,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④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험회사가 적용할 수 있는 순보험요율을 산출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8.>
- ⑤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 산출 등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험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통합・집적(集積)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보험회사가 제4항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신고한 순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순보험료에 대하여 제 1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출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0. 12. 8.>
- ⑦ 보험회사는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기초서류를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⑧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⑨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표할 수 있다.
- 1. 순보험요율 산출에 관한 자료
- 2. 보험 관련 각종 조사 연구 및 통계자료
- ⑩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제177조에서 같다)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순보험료의 산출 또는 보험금 지급업무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 14,, 2015, 12, 22.>
- ①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질병에 관한 통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질병에 관한 통계를 제공받아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순보험료의 산출에 이용하게할 수 있다.
- ②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받아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개정 2014. 1. 14., 2020. 2. 4.>
- 1. 보험회사의 순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경우
- 1의2. 제10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대로 보험회사가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른 경우
- 3.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제10항에 따라 제공받는 개인정보와 제11항에 따라 제공받는 질병에 관한 통계 이용의 범위·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제1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제처 44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177조(개인정보이용자의 의무) 제176조제10항에 따라 제공받은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와 그 밖에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질병에 관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순보험료의산출 ㆍ적용 업무 또는 보험금 지급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타인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전문개정 2010. 7. 23.]
- **제178조(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①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공익이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을 보호하고 모집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각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 1. 회원 간의 건전한 업무질서 유지
 - 2. 회원에 대한 연수 교육 업무
 - 3. 정부·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협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4. 제1호 및 제2호에 딸린 업무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0. 7. 23.]

제179조(감독)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 • 제133조 • 제134조 및 제13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180조(「민법」의 준용)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2절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개정 2010. 7. 23.>

- 제181조(보험계리)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기초서류의 내용 및 배당금 계산 등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를 보험계리사를 고용하여 담당하게 하거나,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보험계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 ② 보험회사는 제184조제1항에 따라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이를 검증 및 확인하는 등 보험계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보험계리사(이하 "선임계리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1.>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31.>

[전문개정 2010. 7. 23.]

- 제181조의2(선임계리사의 임면 등) ① 보험회사가 선임계리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계리사의 선임 후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선임계리사를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선임계리사의 해임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를 해당 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로 선임할 수 없다.
 - ③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선임계리사의 해임 신고를 할 때 그 해임사유를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해임 사유에 대하여 해당 선임계리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법제처 45 국가법령정보센터

- ④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가 제192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기간 중 그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의 임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31.]

- **제182조(보험계리사)** ① 보험계리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와 실무수습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 제183조(보험계리업) ①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보험계리사를 두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④ 그 밖에 보험계리업의 등록 및 영업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① 선임계리사는 기초서류의 내용 및 보험계약에 따른 배당금의 계산 등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증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선임계리사는 보험회사가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지키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기초서류에 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선임계리사 · 보험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는 그 업무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보험계리를 하는 행위
 - 2.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 3.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보험계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 4. 그 밖에 공정한 보험계리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④ 보험회사가 선임계리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그 선임계리사를 해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선임계리사가 회사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
 - 2. 선임계리사가 그 업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3. 선임계리사가 계리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 4. 제192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해임 요구가 있는 경우
 - ⑤ 삭제 < 2022. 12. 31.>
 - ⑥ 금융위원회는 선임계리사에게 그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⑦ 선임계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2. 12. 31.>
 - 1. 보험상품 개발 업무(기초서류 등을 검증 및 확인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를 직접 수행하는 직무
 - 2. 보험회사의 대표이사, 보험회사의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재무관리 책임자의 직무
 - 3. 그 밖에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거나 선임계리사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전문개정 2010. 7. 23.]
- 제184조의2(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 ① 제181조의2에 따라 선임계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제1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사일 것

법제처 46 국가법령정보센터

- 2. 보험계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이 경우 손해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보험계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포함하여 보험계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 야 한다.
- 3. 최근 5년 이내에 제134조제1항제1호(경고・문책만 해당한다) 및 제3호, 제190조 또는 제192조제1항에 따른 조 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②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 당시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31.]

- 제184조의3(선임계리사의 권한 및 독립성 보장 등) ① 선임계리사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선임계리사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사회(「상법」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참석할 수 있다.
 - ③ 선임계리사는 제184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검증·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의견서(이하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라 한다)를 이사회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이사회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는 대표이사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사회 등에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보고를 받은 이사회등은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선임계리사의 의견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가 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선임계리사를 보조하는 인력 및 전산시설 등의 시설을 지원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 12. 31.]
- 제185조(손해사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6.>

- 1.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 2.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로서 보험회사가 이에 동의한 경우
- ②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보험회사에 알리는 경우 보험회사는 그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신설 2024. 2. 6.>
- ③ 보험회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손해사정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6.>
- 1.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할 것
- 2. 고용한 손해사정사에 대한 평가기준에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지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 3.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 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 줄 것
- 4.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 ④ 보험회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24. 2. 6.>
- 1.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 선정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업무위탁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것

법제처 47 국가법령정보센터

- 2. 전체 손해사정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손해사정업무를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선정기준과 그 기준에 따른 선정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할 것
- 3.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 ⑤ 보험회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4. 2. 6.>
- 1. 손해사정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 2.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 3.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 4.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 5.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 6.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
- 7. 손해사정을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하도록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강요하는 행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한 손해사정업무에 개입하는 행위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행위

- 제186조(손해사정사) ① 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등록,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와 실무수습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③ 손해사정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보조인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3.]

- 제186조의2(손해사정사 교육) ① 보험회사 및 법인인 손해사정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손해사정사 (제186조제3항에 따른 보조인을 포함한다)에게 손해사정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② 개인인 손해사정업자(제186조제3항에 따른 보조인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4. 2. 6.]

제187조(손해사정업) ①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손해사정업자는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24. 2. 6.>
- ⑤ 그 밖에 손해사정업의 등록, 영업기준 및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2. 6.>

[전문개정 2010. 7. 23.]

제187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4. 2. 6.]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제처 48 국가법령정보센터

-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①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 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 2. 21.>
 - ②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지체 없이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 ③ 손해사정사(제186조제3항에 따른 보조인을 포함한다)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2. 21, 2024. 2. 6.>
 -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 1의2.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 어느 일방에 유리하도록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 2.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 3.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 4.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
 - 5.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 6.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 7.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0. 7. 23.]

- 제189조의2(손해사정의 표시·광고) ①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과대, 허위 등의 내용으로 보험계약자 등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 2. 6.]

제190조(등록의 취소 등) 보험계리사·선임계리사·보험계리업자·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는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제84조"는 각각 "제182조제1항"·"제183조제1항"·"제186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으로 보고, 제86조제2항제1호에서 "모집"은 보험계리사·선임계리사·보험계리업자의 경우에는 "보험계리"로,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의 경우에는 "손해사정"으로 본다. <개정 2024. 2. 6.>

[전문개정 2010. 7. 23.] [제목개정 2024. 2. 6.]

제191조(손해배상의 보장) 금융위원회는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그 업무를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 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 예탁, 보험 가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3.]

법제처 49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192조(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계리사·선임계리사·보험계리업자·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해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5.>
 - ② 보험계리업자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제133조 및 제13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 는 각각 "보험계리업자", "손해사정업자"로 본다.

제12장 보칙 <개정 2010. 7. 23.>

- 제193조(공제에 대한 협의) ① 금융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공제업과 이 법에 따른 보험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기초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하거나 그 공제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제업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제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공동검사에 관한 협의를 금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0. 12. 8.>

[전문개정 2010. 7. 23.]

제194조(업무의 위탁)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보험협회에 위탁한다.

- 1.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등록업무
- 2. 제87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등록업무
-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 1. 제89조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등록업무
- 2. 제182조에 따른 보험계리사의 등록업무
- 3. 제183조에 따른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의 등록업무
- 4.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등록업무
- 5. 제187조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의 등록업무
- ③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금융감독원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협회의 장,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또는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의 장,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3.]

- 제195조(허가 등의 공고) ①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제74조제1항 또는 제134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 1.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보험회사
 - 2.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내사무소
 - 3. 제125조에 따라 인가된 상호협정
 - ③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 1.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
 - 2. 제182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사 및 제183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업자
 - 3. 제186조에 따라 등록된 손해사정사 및 제187조에 따라 등록된 손해사정업자
 - ④ 보험협회는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대리점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96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8조, 제99조,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 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2020. 3. 24.>

- 1. 삭제 < 2020. 3. 24.>
- 2. 제98조를 위반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경우: 특별이익의 제공 대상이 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이하
- 3. 제99조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 의 100분의 50 이하
- 3의2. 제105조제1호를 위반하여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 4.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용공여 등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등의 100분의 30 이하
- 5. 제10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 6. 제10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채권 또는 주식의 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소유한 채권 또는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 6의2. 제1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하
- 7. 제1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자산의 매매 또는 교환 등을 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이하
- 8. 제127조를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 9.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 10. 제128조의3을 위반하여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 11. 제1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기초서류의 변경・사용중지 명령 또는 보험료환급・보험금 증액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 · 제96조제1항 · 제9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4, 18.>
- ③ 제98조,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제6호 또는 제111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정상(情狀)에 따라 제200조 또는 제202조에 따른 벌칙과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은행법」제65조의4부터 제65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13장 벌칙 <개정 2010. 7. 23.>

제197조(벌칙) ①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또는 상호회사의 발기인, 제7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제175조제1항에 따른 설립위원・이사・감사,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나지배인, 그 밖에 사업에 관하여 어떠한 종류의 사항이나 특정한 사항을 위임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보험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법제처 51 국가법령정보센터

② 상호회사의 청산인 또는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제 1항에 열거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198조(벌칙) 제25조제1항 또는 제54조제1항의 기관을 구성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보험계약자나 사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전문개정 2010. 7. 23.]

- 제199조(벌칙) 제197조제1항에 열거된 자 또는 상호회사의 검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 1. 상호회사를 설립하면서 사원의 수, 기금총액의 인수, 기금의 납입 또는 제34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와 제38조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열거된 사항에 관하여 법원 또는 총회에 보고를 부실하게 하거나 사실을 숨긴 경우
 - 2. 명의에 관계없이 보험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그 주식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은 경우
 - 3.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기금의 상각, 기금이자의 지급 또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을 한 경우
 - 4. 보험업을 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투기거래를 위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을 처분한 경우

[전문개정 2010. 7. 23.]

- **제20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 1. 제4조제1항을 위반한 자
 - 2. 제10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 3. 제106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채권 및 주식을 소유한 자
 - 4. 제1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5. 제111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 [전문개정 2010. 7. 23.]
- 제201조(벌칙) ① 제197조 및 제198조에 열거된 자 또는 상호회사의 검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 ② 제1항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供與)하거나 공여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0. 7. 23.]

- **제2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4. 18., 2017. 10. 31., 2023. 10. 24., 2024. 2. 6.>
 -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본감소의 결의를 한 주식회사
 - 2. 제75조를 위반한 자
 - 3. 제98조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제공(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액 지급의 약속을 말한다)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收受)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 3의2. 제102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102조의6제 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
 - 4.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 5. 제177조를 위반한 자
 - 6. 제183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한 자

법제처 52 국가법령정보센터

-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3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 8. 제189조제3항제2호를 위반한 자

- 제20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보험계약자총회, 상호회사의 창립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의 발언이나 의결권 행사
 - 2. 제3장제2절·제3절 및 제8장제2절에서 규정하는 소(訴)의 제기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주주 또는 100분의 5 이상의 사원의 권리의 행사
 - ② 제1항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0. 7. 23.]

- **제20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 정 2024, 2, 6,>
 -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자
 - 2. 제83조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한 자
 - 3의2. 제86조제2항(제19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정지의 명령을 위반하여 모집, 보험계리 업무 또는 손해사정업무를 한 자
 - 4. 제88조제2항, 제90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명령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 5. 삭제 < 2017. 4. 18.>
 - 6. 제150조를 위반한 자
 - 7. 제181조제1항 및 제18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확인을 한 보험계 리사 및 선임계리사
 - 8. 제18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선임계리사 및 보험계리사
 - 9. 제189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손해사정사
 - ② 보험계리사나 손해사정사에게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205조(미수범) 제197조 및 제19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206조(병과)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207조(몰수) 제201조 및 제203조의 경우 범인이 수수하였거나 공여하려 한 이익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208조(양벌규정) ①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200조, 제202조 또는 제20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제처 53 국가법령정보센터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하여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그 소송행위에 관하여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대표하는 법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경우의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209조(과태료) ①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 2020. 3. 24., 2022. 12. 31.>

- 1. 제10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 등을 겸영한 경우
- 1의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95조를 위반한 경우
- 3. 제96조를 위반한 경우
- 4. 보험회사 소속 임직원이 제101조의2제3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 다만, 보험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5. 제106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6. 제109조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 7. 삭제 < 2017. 4. 18.>
- 7의2. 삭제 < 2020. 3. 24.>
- 7의3. 제1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 7의4. 제1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경우
- 8. 제113조를 위반한 경우
- 9. 제116조를 위반한 경우
- 10. 제118조를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 등을 제출 한 경우
- 10의2.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이나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과다하게 계상하는 경우 또는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 11.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12. 제1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 13. 제128조의2를 위반한 경우
- 14. 제131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15.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6. 제18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임계리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17. 제181조의2에 따른 선임계리사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 18. 제184조의2에 따른 선임계리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선임계리사로 선임한 경우
- ② 제91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되려는 자가 제83조제2항 또는 제 10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7, 4, 18.>
- ③ 보험회사가 제95조의5를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20. 12. 8.>
- ④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7. 4. 18., 2020. 12. 8., 2022. 12. 31.>
- 1. 제85조의4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 2. 제184조제7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담당하게 한 경우
- 3. 제184조의3제1항, 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선임계리사의 권한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⑤ 제11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보험회사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20. 5. 19., 2020. 12. 8.>

법제처 54 국가법령정보센터

- ⑥ 보험회사의 발기인・설립위원・이사・감사・검사인・청산인,「상법」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5. 7. 31, 2017. 4. 18, 2018. 12. 11, 2020. 3. 24, 2020. 5. 19, 2020. 12. 8, 2021. 4. 20, 2022. 12. 31.>
- 1. 보험회사가 제10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 등을 겸영한 경우
- 2. 삭제 < 2015. 7. 31.>
- 3. 제18조를 위반하여 자본감소의 절차를 밟은 경우
- 4. 관청・총회 또는 제25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의 기관에 보고를 부실하게 하거나 진실을 숨긴 경우
- 5.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사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입사청약서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 게 적은 경우
- 6. 정관·사원명부·의사록·자산목록·재무상태표·사업계획서·사무보고서·결산보고서, 제44조에서 준용하는 「상법」제29조제1항의 장부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 7. 제57조제1항(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제64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상법」제4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 8. 사원총회 또는 제54조제1항의 기관을 제59조에서 준용하는「상법」제364조를 위반하여 소집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소집하거나 제59조에서 준용하는「상법」제3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 9. 제60조 또는 제62조를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
- 10. 제69조를 위반하여 해산절차를 밟은 경우
- 11. 제72조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을 처분하거나 그 남은 자산을 배분한 경우
- 12. 제73조에서 준용하는「상법」제254조를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게을리한 경우
- 13. 청산의 종결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제535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정한 경우
- 14.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제536조를 위반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 15. 제7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제619조 또는 제620조를 위반한 경우
- 16. 제8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17. 보험회사가 제95조를 위반한 경우
- 18.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제95조의2, 제95조의5, 제97조 또는 제101조의2제1항・제2항을 위반한 경우
- 19. 보험회사가 제96조를 위반한 경우
- 20. 제106조제1항제4호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산운용을 한 경우
- 21. 제109조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 22. 제110조를 위반한 경우
- 22의2. 삭제 < 2020. 5. 19.>
- 23. 제113조를 위반한 경우
- 24. 제116조를 위반한 경우
- 25. 제118조를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 등을 제출 한 경우
- 26. 제119조를 위반하여 서류의 비치나 열람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 27.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 우
- 28.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29. 제1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 30. 제125조를 위반한 경우
- 31. 제126조를 위반하여 정관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처 55 국가법령정보센터

- 32. 제127조를 위반한 경우
- 33. 보험회사가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경우
- 34. 보험회사가 제128조의2를 위반한 경우
- 35. 보험회사가 제128조의3을 위반하여 기초서류를 작성 변경한 경우
- 36. 제130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37. 제1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38.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39. 금융위원회가 선임한 청산인 또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나 청산인에게 사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경우
- 40. 제141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이전절차를 밟은 경우
- 41. 제142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하거나 제144조(제15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할 행위를 한 경우
- 42. 제151조제1항·제2항, 제153조제3항 또는 제7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상법」제232조를 위반하여 합병절차를 밟은 경우
- 43. 이 법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 44.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보험계리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경우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4. 1. 14., 2014. 10. 15., 2016. 3. 29., 2017. 4. 18., 2018. 12. 31., 2020. 3. 24., 2020. 5. 19., 2020. 12. 8., 2024. 2. 6.>
- 1. 제3조를 위반한 자
- 2. 제85조제2항을 위반한 자
- 2의2. 제85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 2의3. 삭제 < 2017. 4. 18.>
- 2의4. 제87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 3. 제92조를 위반한 자
- 4. 제93조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 5. 제95조를 위반한 자
- 6. 제95조의2를 위반한 자
- 7.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제96조제1항·제97조제1항 및 제9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다만,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7의2. 제95조의5를 위반한 자
- 8. 삭제 < 2020. 3. 24.>
- 9. 제96조제1항을 위반한 자
- 10. 제97조제1항을 위반한 자
- 11. 제99조제3항을 위반한 자
- 11의2. 제101조의2를 위반한 자
- 12. 제112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한 자
- 13. 제12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교 · 공시한 자
- 14. 제131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32조·제179조·제192조제2항, 제133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36조·제179조· 제192조제2항 및 제19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15. 제133조제3항을 준용하는 제136조・제179조 및 제19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6. 제133조제3항을 준용하는 제136조・제179조・제192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 17. 제162조제2항에 따른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8. 제185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법제처 56 국가법령정보센터

- 19. 제18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
- 20. 제18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21. 제189조의2를 위반하여 손해사정의 표시・광고를 한 자
- ⑧ 제187조의2를 위반하여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24. 2. 6.>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개정 2017. 4. 18., 2020. 5. 19., 2020. 12. 8., 2024. 2. 6.> [전문개정 2010. 7. 23.]

제210조 삭제 <2010. 7. 23.>

부칙 <제20436호,2024. 9. 20.>(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변경한 날부터 본점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점과 종(從)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를 "변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로 한다.

제44조 중 "제35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를 "제37조, 제39조, 제40조"로 한다.

제137조제2항 중 "본점과 지점 또는 각 사무소 소재지"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② 생략

법제처 57 국가법령정보센터